제536회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회 의 록

2015. 12. 11.(금)

국 무 조 정 실

규 제 조 정 실

1. 회의개요

○ 일　　시 : 2015년 12월 11일(금) 16:00~18: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출석위원(8명)

- 민간위원 : 전의찬, 김동원, 김용하, 전병준, 원숙연 위원

- 정부위원 : 국조실(규제심사관리관), 행자부(정책기획관), 산업부(감사관)

2. 상정안건

의안번호	상정기관	의 안 명	비고
2015-515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안건**
2015-456	교육부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안건**

3. 심의 · 의결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2015-515호)

1 안전보건교육 의무 확대

□ 심의내용

○ 서비스업종 중 재해율이 높은 **특정 업종**(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교육** 의무 부과

□ 주요발언

○ (OOO위원) 이번에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확대되는 업종을 보면, 음식점업 등 생계형 업종으로 사업주에게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고용노동부) 서비스업의 산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업(5인 이상 50인 미만)에서의 재해율이 서비스업 전체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고 있어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고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함

그리고, 우리 부처에서는 서비스업종에서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50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비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실시('14년~)하고 있고,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동 버스를 이용한 현장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교육을 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직접 자신의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어 사업주에게 교육으로 인한 부담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됨

○ (OOO위원) 비록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부과되는 음식점업 등의 규모가 작기는 하나, 최근 3년간의 재해율 통계를 보면 서비스업 전체 평균은 0.39%인 반면, 음식점업은 0.84%, 숙박업 0.54%에 달하는 등 재해율이 매우 높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됨. 또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업안전법상 각종 의무가 적용되는 업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번 규제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OOO위원)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재해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지?

⇒ (고용노동부) 지난 2012년 실시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안전보건교육제도 도입시 재해감소 효과가 크다고 보여주고 있음. 예를 들어 정기교육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인한 감소효과가 39.1%에 달함

○ (OOO위원) 교육효과가 제법 큰데, 그 효과는 어떻게 측정했는지?

⇒ (고용노동부) 100여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해서 그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사고예방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인식도를 조사함

○ (OOO위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대부분 넘어짐, 떨어짐, 베임 등 단순·반복형 재해이므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나 물질 등을 취급하는 제조업, 건설업 등과 동일한 교육시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 (고용노동부) 현행 법규상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의무 교육시간(정기교육)을 50% 감면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교육시간을 50% 축소한다면 사실상 교육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우려됨

○ (고용노동부) 작업환경도 변화하고 종사하는 근로자도 이직 등 변경하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안전보건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3년 재검토형 일몰 설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OOO위원) 안전·보건교육이 실제 산재예방 효과가 있는지 일정 기간 후 다시 살펴보고 규제존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심의결과 : 개선권고(3년 재검토형 일몰설정), 부대권고**

○ 재해율 상위 업종(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여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산재예방을 강화할 필요다고 판단

- 다만, 대부분 단순·반복형인 서비스업의 재해 특성을 감안,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50%이상 단축토록 부대권고(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 또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제 산재예방 효과가 있는지 일정 기간 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3년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가.「진로교육법 시행규칙」(제2015-456호)

1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등

□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해제)** 등 규율

○ **(지정기준)** i) 진로분야 **전문성** 확보, ii)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보유,** iii)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시설** 갖출 것

○ **(지정해제·취소 기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정해제 신청한 경우, **지원금의 용도외 사용**

[제536회차('15.12.11 행정사회분과위원회)**]**

□ **주요발언**

※ 행정규제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실시

○ (○○○위원) 진로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 국내 진로교육이 상당히 부실한 것이 사실임. 진로교육센터를 다수 지정하여 청소년이 언제나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교육부) 동 센터는 진로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게됨. 전국적 조직으로 1개의 센터를 지정할 계획임

○ (○○○위원) 현재까지 진로교육전담기구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판단됨. 현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는지?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몇 개의 기관이 일부 진로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총괄기구는 없는 상황임

○ (○○○위원) 지정기준이 막연하고 모호하여 어느 기관이 지정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임. 이렇게 모호하게 지정기준을 마련한 유사사례는 있는지?

→ (교육부) 과거 일부 법령에서 지정기준을 추상적으로 정한 사례가 있으나,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토록 하겠음

○ (○○○위원) 5년마다 재지정이 가능하다면 재지정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기관이 다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형식적으로 기존 기관이 재지정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경쟁을 통해 가장 능력 있는 기관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위원) 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함. 동 지정취소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심의결과 : 개선권고**

○ **지정기준이 모호**하며, **지정취소 기준은 위임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는 바, **지정기준**은 진입장벽을 낮게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취소** 기준은 **삭제**하고 향후 **법 개정 후 다시 마련**토록 **개선권고**